2022-10-06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인천지방법원 2019. 10. 24. 선고 2019노1241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형 사 부

파 결

사건 2019노124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희송(기소), 장지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수호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4. 19. 선고 2018고정711 판결

판결선고 2019. 10. 2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 1. 항소이유의 요지
- 가. 법리오해
- 이 사건과 관련된 민사사건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해야 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 나. 양형부당

2022-10-06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B건물 C호에서 청년 창업자로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과 같은 건물 E호에서 청년 창업자로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1. 22:5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인천 서구청에서 운영하는 새을 전자민원창구 온라인 민원상담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을 비방할 목적으로 "서구청 지원 G시장 청년상인 A이 청년상인 D 폭행 모욕 기소 알림'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인천 서구청 청년상인 A은 G시장에서 폭행하고 보복 폭행해서 경찰에 기소된 청년상인 H 아줌마 D을 내버려둔 서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가게 영업을 하지 못한 부분의 책임을 물으며 특히 G시장에서의 폭행과 보복 폭행을 알고서도 이를 방관한 공무원들의 무책임한 행동을 고발합니다. 공무원들은 A이 1월 7일 오후 4시까지 보복 폭행이 두려워 도와달라고 요청해도 무시했고 오히려 G시장 가서 장사 잘 하라고 보냈는데 바로 보복 폭행한 D을 막지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D은 상해폭행과 보복 폭행 두건의 기소뿐만 아니라 모욕죄도 기소된 바입까지 나쁜말을 내뱉으면 저를 심하게 아프게 했습니다. 저는 서구청에서 내일 당장 가해자 D의 영업을 중단시킬 것을 요청합니다. 범죄자는 더 이상 청년상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나이 제한에서 걸리지 않았을 뿐 남편이 버는 월급과 아이가 두 명 있는 아줌마로 1인 가구인 저와 다른 39살 나이만 걸리지 않는 청년상인입니다. 저는 지금 D 때문에 1달 이상 신변 보호 중으로 더 이상 폭행과 모욕을 당하지 안하게 서구청에게 D가게의 영업을 중단시킬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영업 못한 부분에 대한 피해보상을 서구청에게 요구합니다. 조속히 처리해서 제가 피해자로 더 이상 가게 영업을 D이 무서워 못하지 안하게 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하게 해 주세요."라는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요지

원심은, 1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Dol 피고인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D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피고인이 D의 명예를 훼손한 이 사건과는 별개의 것인 점, 2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제2항은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내용이 이미 제기된 형사 사건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3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이후 명시적으로 처벌의사를 철회하거나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는 내용의 문서를 법원에 제출한 사실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처벌불원의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원인으로 한(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명예훼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반소로써 제기하였다.

(나) 위 소송의 항소심에서, 2019. 1. 29.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위 결정은 2019. 2. 15. 확

2022-10-06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정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18머90565, 2018머90572(반소)].

- (다)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9. 2. 28.까지 300,000원을 지급하고, 이를 지체하면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2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위 결정사항에서 정한 외에는 서로에 대하여 더 이상의 채권,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앞서 본 것처럼 위 결정문 제2항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1 위 조정 결정이 확정된 사건의 청구원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한 사건(본소) 및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반소)을 이유로 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므로, 위 강제조 정 결정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 있는 점, 2 위 조정 결정 당시 폭행사건과 명예훼손 사건은 이미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있었거나 형사절차가 종결되었으므로, '앞으로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사실상 별다른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3 피고인 역시 위 내용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라고 해석하고 원심법원에 위 결정문을 증거로 제출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본 사건을 포함하여 당시 진행 중이던 형사사건 모두에 대하여 합의할 의사로 위 조정결정에 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조정결정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소결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위 제2의 다항에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가 원심판결 선고 전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인규(재판장) 장유진 이민지